瑞山市議會事務局設置및職員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 1998. 12. 17

나.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8. 12. 18

라. 上程日字 : 1998. 12. 21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自治行政課長 方景泰)

가. 提案理由

o 정부의 조례·규칙 표준모델 지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단체 간의 통일성과 균형유지

나. 主要骨子

o 불합리한 조문의 제목 및 단어개정

o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

o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부조직」이란 단어 삭제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o 정부의 조례·규칙 표준모델 참고지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단체간의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

o 조례의 내용에 쓰여진 단어중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단어를 알기쉽게 고쳐 개정하고,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부조직」이란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생 략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38 호
의 결 년 월 일	1998. 12. 24. (제 26 회)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8. 12. 17.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

제출년월일 : 1998. 12. 17.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개정이유

○ 정부의 조례·규칙 표준모델 지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단체간의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임.

□ 주요골자

○ 조례중 불합리게 쓰여진 조문의 제목 및 단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음.

○ 관련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원의 임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별도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음(안 제5조제2항).

○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인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부조직」이란 단어를 삭제하였음(안제6조).

□ 기타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

서산시조례 제 호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분장사무"를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직무"를 "사무국의 설치"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제4조제2항중 "심사"를 "검토"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중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을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사무분장---------- ---------- -.
제2조(직무) ①(생략) ②(생략)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생략)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삭제) ③(현행과 같음)
제4조(전문위원) ①(생략)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생략)	제4조(전문위원) ①(현행과 같음) ②----------검토---------- 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직원의 정원) ①(생략)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①(현행과 같음) (삭제)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